



# 독일 환경정보법과 소비자정보법 (Umweltinformationsgesetz-UIG<sup>1)</sup> und Verbraucherinformationsgesetz-VIG<sup>2)</sup>)

## I. 의의

독일에서는 2002년부터 계획되었던 소비자정보법이 독일 식량·농업 및 소비자보호부의 장관 Renat Künast에 의해 제출되어 2007년 11월 5일 공포되었다. 본 법은 2008년 5월 1일 전체법이 발효한다. 본 법을 통해서 독일에서는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결정적으로 개선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독일은 작년에 전 독일을 떠들썩하게 한 Gammelfleischskandal(썩은 고기 스캔들)<sup>3)</sup>로 인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관리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의되어오던 소비

자정보법 제정이 탄력을 받아 오랫동안 끌어오던 소비자정보법이 작년 연말에 전격적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이에 앞서 여러 환경스캔들에 기인해서 독일은 일찍이 1994년에 환경문제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환경정보법을 제정했다. 이는 관청정보의 비밀주의 원칙의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으로 받아들여진 혁신적인 사건이었다. 본 법은 2004년 말 새로이 중요부분이 전면 개정되어 기존의 내용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일반인의 청구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청구권의 응답기한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정보공개거절사유가 축소되는 등

\*\*\* -----

1) Dezember 2004 BGBL. I S. 3704.

2) 본 법의 정식명칭은 “Gesetz zur Verbesserung der gesundheitsbezogenen Verbraucherinformation”-건강 관련 소비자정보의 개선을 위한 법 (November 2007 BGBL. I S. 2558) 이다.

3) 독일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음식 중의 하나가 터키 전통 음식인 케밥인데, 이 케밥의 원료가 되는 고기를 만들고 대량으로 유통하는 업자가 오랫동안 케밥의 고기에 유통기간이 지난 썩은 고기를 사용하여 독일 전국에 유통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작년 한해 전 독일을 충격에 몰아넣었으며 이 유통업자는 이 사실이 들롱 나자 자살한 사건이다. 이러한 썩은 고기 등의 불법 식품을 가공 유통 시킨 사례는 이외에도 수년간 종종 발생해왔으며 고질적인 독일의 병폐로 꼽히고 있다.

기존의 법 내용보다 한층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들 두 개의 법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규율대상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단지 정보청구의 대상이나 적용영역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한 공통점은 무엇인지가 독일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위주로 두 개의 법을 함께 비교 소개하기로 한다.

## II. 법의 제정과정

### 1. 환경정보법(UIG)

독일내에서는 입법자에게 환경정보법의 제정을 위한 아무런 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1990년의 EG환경정보지침(EG-Umweltinformationsrichtlinie [UIRL])<sup>4)</sup>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처음으로 환경정보법이 제정되었다. 그 뒤에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제4차 각료회의에서 1998년 6월 25일에 채택된 아르후스협약(Aarhus-Konvention)이 2001년 10월 30일에 발효하게 되는데, 이 협약은 환경정보법의 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협약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1축은 정보에의 접근·

이용(액세스)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1축에 따라 유럽에서는 1990년의 EG환경정보지침(EG-Umweltinformationsrichtlinie [UIRL])이 폐지되고 새로이 2003년 1월 28일 환경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RL 2003/4/EG)<sup>5)</sup>이 제정되었다. 본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크게 확대했다는 데 있다. 즉 일반인이 그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관한 증명 없이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정보청구권의 실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본 지침의 영향으로 독일에서는 2004년 12월 22일 기존의 환경정보법의 중요부분이 새로이 개정되었고, 본 법은 200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2. 소비자정보법

독일 연방정부는 소위 Gammelfleischskandal(썩은 고기 스캔들)과 여러 식품스캔들을 근거로 그동안 좌절되었던 일련의 법안 발의권을 다시 새롭게 정비해서 이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여러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 법은 CDU(독일기민당)가 지배하던 연방상원(Bundesrat)에서 좌절되었다. 독일 대연정의 연정 협약에도 소비자정보법과 같은 일련의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무관청인 독일 식량·농업 및 소비자보호부

\*\*\* -----

4) RL 90/313/EWG v. 7. 6. 1990, ABl 1990 Nr. L 158 S. 56 ff.

5) ABl 2003 Nr. L 41 S. 26 ff.

의 당시 장관이던 Horst Seehofer는 다시 입법 절차를 진행해서 마침내 연방하원(Bundestag)이 2006년 6월 29일 소비자정보법을 통과시키고, 2006년 9월 22일 연방상원(Bundesrat)의 비준을 거쳐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10일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법률을 받은 연방대통령청(Bundespräsidialamt)은 2006년 11월 말에 헌법상의 고려를 언급하면서 본 법이 독일연방헌법 제84조 제1항 제7문<sup>6)</sup>에 위배된다고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에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연방정부는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다수의 일치된 견해로 독일연방헌법 제84조 제1항 제7문에 의해 금지된 지방자치단체에의 임무 위임규정이 본 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2006년 12월 8일 연방대통령 Horst Köhler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이 헌법에 위배됨을 근거로 서명을 거부하였다. 연방 대통령의 이유서에 의하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sup>7)</sup> “.....게마인테(Gemeinde - 시·읍·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청에게 소비자정보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검토하고 정보를 허락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이 바로 연방헌법 제84조 제1항 제7문이 뜻하는 임무위임에 해당한다. 여기에 나는 2006년 9월 1일 이래로 적용되어온 연방헌법 제84조 제1항 7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 있다고 보며, 그것이 내가 법의 서명을 주저하는 이유이다. ....나의 견해로는 소비자보호라는 상당한 이익은 헌법에 의해 금지된 임무위임이 없는 새로운 법의 신속한 의결을 통해서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방대통령의 결정은 한편으로는 연방대통령의 임무와 지위 그리고 검토 능력 등에 관한 큰 논란을 독일 내에서 불러일으켰다.

연방내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2007년 4월 4일 더 많은 소비자 정보를 허용하는 새로운 법률초안을 제출하였다.

동시에 연방대통령의 이의를 고려하여 다음의 조항을 삽입했다. “본 법은 게마인테와 게마인테연합(Gemeindeverband)에게 본 법에 따라 란트법(Landesrecht)에 의해서 임무가 위임되는 경우에만 게마인테(Gemeinde)와 게마인테연합(Gemeindeverband)에 적용된다.”<sup>8)</sup> 2007년 7월 5일 소비자정보법은 연방하원에서 가결되고,

\*\*\* -----

6) 독일연방헌법 제84조 제1항 제7문은 “Durch Bundesgesetz dürfen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n Aufgaben nicht übertragen werden(연방법률을 통해서 게마인테와 게마인테연합에게 임무를 위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BR-Drs. 584/06 vom 8. Dezember 2006 참조.

8) 이 조항은 현재 공포된 소비자정보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Satz1 gilt im Fall einer Gemeinde oder eines Gemeindeverbandes nur, wenn der Gemeinde oder dem Gemeindeverband die Aufgaben nach diesem Gesetz durch Landesrecht übertragen worden sind.”



2007년 9월 21일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서 11월 9일 공포되었다. 본 법은 비용조항(비용조항은 법 공포와 동시에 발효)을 제외하고 2008년 5월 1일 발효한다.

### III. 법의 중요내용

#### 1. 입법목적

소비자정보법은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법이유서<sup>9)</sup>에 있는 ‘투명성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는 캐치프라이즈를 통해 그 입법목적울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행정관청에 존재하는 식료품과 다른 생산품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함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환경정보법도 그 목적은 소비자정보법과 유사한데, 행정청의 정보 비밀주의 전향적 전환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행정청에 존재하는 환경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용 및 이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보장하고, 이들 정보가 접근 이용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UIG 제1조 참조).

#### 2. 청구권자

소비자정보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

나’ (Jeder) 정보에 대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환경정보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사람’ (Jeder Person)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본 법들에 청구권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정보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법(私法)상의 자연인 및 법인은 모두 그의 거주지 혹은 영업지에 관계없이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법인은 청구권이 없다. 한편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정보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권자는 그 정보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의 증명 없이도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환경정보법 제3조 제1항에는 명시적으로 “.....법적 이해관계를 논증할 필요 없이.....”라는 문구를 두어 이를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정보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법적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규정도 없어서 해석상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3. 정보청구대상

##### (1) 환경정보법

환경정보에 대한 개념은 환경정보법이 도입된 이래 점점 확대되었고, 환경정보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

- 환경구성요소(공기, 대기, 물, 땅, 자연적 생활공간 등)의 상태와 상호작용에 관한 정

\*\*\* -----

9) BR-Drs. 273/07, S. 1

보(제1호)

- 제1호의 환경구성요소에 (개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물질, 에너지, 소음, 빛의 방사(Strahlung), 쓰레기, 오염물질의 방출(Emission) 등)에 관한 정보(제2호)
- 제1호의 환경구성요소 혹은 제2호의 환경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개연적으로) 작용하는 조치와 행위 혹은 환경구성요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와 행위에 관한 정보(제3호)
- 환경법의 실행에 관한 보고에 관한 정보(제4호)
- 제3호의 조치와 행위의 준비와 실행을 위해 사용된 경제적 분석에 관한 정보(제5호)
- 그들 각각이 제1호의 환경구성요소의 상태 혹은 제2호와 제3호의 요소, 조치와 행위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수 있는 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인간의 삶의 조건 및 유적과 건축물에 관한 정보 ; 여기에는 식료품사슬(Lebensmittelkette)의 오염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제6호).

## (2) 소비자정보법

소비자정보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식료품및사료법(LFGB)10의 적용영역에서 식료품및사료법의 위반과 그 법에 근거하

여 제정된 법규명령의 위반 및 본 영역에 직접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법률행위의 위반에 관한 정보 및 그 위반에 관련한 조치와 결정에 관한 정보(제1호)

- 식료품및사료법상의 생산물(Erzeugnis)에서 비롯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에 관한 정보(제2호)
- 생산물(Erzeugnis)의 특성표시, 원산지, 성질, 사용과 생산물의 생산과 취급 및 이에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관한 정보(제3호)
- 그 원료와 원료의 획득에 사용된 방법에 관한 정보(제4호)
-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조치와 다른 관청의 행위 및 위반에 관한 통계자료에 관한 정보(제5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비자정보는 한편으로는 식료품및사료법(LFGB)의 적용영역에서의 본질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부분 식료품및사료법(LFGB)상의 생산물(Erzeugnis)과의 관련을 요한다. 생산물(Erzeugnis)의 개념에 관해서는 식료품및사료법(LFGB)에 규정되어 있다. 식료품및사료법(LFGB)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생산물(Erzeugnis)이란 “식료품, 식품첨가물, 사료, 화장품원료와 생활필수품”(Bedarfsgegenstände)을 말한다. 생활필수품(Bedarfsgegenstände)이란 적어도 인체에 간접적으로

\*\*\* -----

10) Lebensmittel-, Bedarfsgegenstä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LFGB), BGBl 2006 I S. 945 ff.



접촉하거나 식료품에 부가되어 오는 것 예를 들어서 식료품과 화장품의 포장지, 장난감, 의복, 침대시트, 청소용 세제 등을 말한다. 한편 생산물의 성질은 현존하는 상태 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의 상태의 전망까지 포함한다.

### (3) 정보청구대상의 중복영역

환경정보, 예를 들어서 식료품사슬의 오염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혹은 원료획득방법에 관계되는 환경정보는 '생산물'(Erzeugnis)과 관련하여 인식되어질 수 있는 한 동시에 소비자정보법상의 소비자정보에도 해당한다. 역으로 예를 들어서, 식료품사슬의 오염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혹은 '생산물'(Erzeugnis)의 원료획득방법 같은 소비자정보는 적어도 간접적으로 환경구성요소(공기, 대기, 물, 땅, 자연적 생활공간 등)와 관련을 가지는 한 환경정보법상의 환경정보에도 해당한다.

과일이나 채소의 재배에 사용된 살충제의 양에 관한 정보는 동시에 환경정보 및 소비자정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식료품에 해당하고 또한 식료품사슬의 한 부분을 이루는 채소나 과일 같은 생산물(Erzeugnis)의 취급을 통해서 환경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땅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염물질의 방출(Emission)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서 생활 필수품(Bedarfsge-

genstände) 즉, 생산물(Erzeugnis)에 해당하는 세제나 포장지의 생산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방출되어지는(이는 환경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에 해당한다) 오염물질에 관한 정보는 환경정보와 소비자정보 양자모두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정보접근을 위한 어떤 법원칙이 적용될지는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양 영역이 중복되는 경우 어느 법을 선택할 지는 정보청구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 4. 정보청구의 상대방

환경정보법에 의하면 그 행위영역을 불문하고 연방의 모든 관청이 정보공개 의무자이다. 그러나 소비자정보법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자는 오직 식료품및사료법(LFGB) 제1조상의 목적<sup>11)</sup>을 충족하기위해 공법상 임무를 부여받은 관청에만 해당한다.

또한 소비자정보법에 따르면 사법상의 개인에게 존재하는 정보는 그 사인이 공적임무를 부여받고 관청의 통제 하에 놓여 있는 경우에 한해 정보제공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 의 허용은 감독관청에게 관할권이 있다. 그러나 환경정보법은 그와 반대로 환경정보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기해서 사인에게 직접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

11) 식료품및사료법(LFGB) 제1조에 의하면 본 법의 목적은 인간건강의 위험방지 혹은 예방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사료·화장품원료와 생활필수품의 유통에 있어서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활동참여자들과 소비자를 교육시키는데 있다.

두 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환경정보법은 오직 연방관청 혹은 연방차원의 다른 관청에만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데 반해, 소비자정보법은 연방차원 뿐만 아니라 란트차원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소비자정보법은 게마인테와 게마인테연합(Gemeindeverband)에게 본 법에 따라 란트법(Landesrecht)에 의해서 임무가 위임되는 경우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5. 절차규정

### (1) 신청형식과 공개형식

독일 행정절차법 제10조의 행정절차의 형식자유주의 원칙(§10 VwVfG)<sup>12)</sup>에 따라서 환경정보법은 정보청구의 신청형식을 신청자의 임의에 맡겨놓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정보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신청형식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법은 모두 그 신청이 어떠한 정보를 원하는지 충분히 특정되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UIG 제4조 제2항, VIG 제3조 제1항 참조).

환경정보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형식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UIG 제3조 제2항 참조), 소비자정보법은 해당 정보공개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통지, 문서열람 혹은

특별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VIG 제5조 제1항 참조).

### (2) 기간규정

환경정보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가능한 빨리,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신청의 허락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정보법은 신청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행정절차법상의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0조 제2문(“행정절차는 간소하고 목적에 맞으며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한다”)이 적용된다. 즉 신속한 처리에 관한 명시적인 기간제한 규정이 없다. 소비자정보법 제4조 제2항의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오직 ‘신청의 허락’에만 적용되는 기간제한이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되어진다(VIG 제4조 제3항). 정보공개의 신청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게는 정보공개허용여부의 결정전에 입장표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IG 제9조 제1항, VIG 제4조 제1항 참조). 상기한 소비자정보법 제4조 제2항의 기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되어진다(VIG 제4조 제3항). 또한 환경정보법 제3조 제3항의 1개월의 기간은 특별히 광범위하거나 복합적인 정보의 경우에는 2개월로 연장되어질 수 있다(UIG 제3조 제3항 제2호).

\*\*\* -----

12) 독일 행정절차법 제10조 “행정절차는 그 절차의 특정된 형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행정절차는 간소하고 목적에 맞으며 신속히 처리되어야만 한다.”



### (3) 비용규정

환경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정보 법 상의 직무행위를 위해서 비용이 징수되어 질 수 있다(UIG 제12조 제1항, VIG 제6조 제1항 참조). 그러나 환경정보의 단순한 안내를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다(UIG 제 12조 제1항). 소비자정보법의 경우도 식료품및 사료법(LFGB)의 위반에 관한 정보는 무료이다. 한편 유럽공동체법원(EuGH)은 독일환경정보법에 대한 판결에서 정보공개가 거절된 경우 비용 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sup>13)</sup>

## 6. 정보공개거절사유

### (1) 환경정보법

#### ① 공익 보호를 위한 거절사유

환경정보법 제8조는 공익 보호를 위해서 그 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단히 중요한 조항을 위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국제관계 혹은 공공의 안전의 보호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제1항 제1호)
- 정보제공의무기관의 조언의 신뢰에 해가 되는 경우(제1항 제2호)
- 진행 중인 재판절차 등에 해가 되는 경우(제1항 제3호)
- 환경 혹은 환경의 구성요소에 해가 되는 경

#### 우(제1항 제4호)

#### ② 사익 보호를 위한 거절사유

환경정보법 제9조는 사익 보호를 위해서 그 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단히 중요한 조항을 위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개인관련데이터의 정보공개를 통해서 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제1항 제1호)
- 환경정보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1항 제2호)
- 업무상 비밀 혹은 사업상 비밀의 공개를 통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혹은 그 정보가 세법상의 비밀 또는 통계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제1항 제3호)

### (2) 소비자정보법

#### ① 공익 보호를 위한 거절사유

소비자정보법 제2조 제1호는 공익 보호를 위해서 그 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단히 중요한 조항을 위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보의 공개가 국제관계 혹은 군사적 특히 연방군의 안전에 민감한 이해관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a, aa)
- 관청의 조언의 신뢰에 해를 끼치거나 혹은

\*\*\*

13) EuGH, Urt. v. 9. 9. 1999, NVwZ 1999, 1212 참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제1호 a, bb)

-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법상의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서 그 정보의 공개가 절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제1호 b)
- 정보의 공개가 공개대상이 된 기관의 국고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c)

#### ② 사익 보호를 위한 거절사유

소비자정보법 제2조 제2호는 사익 보호를 위해서 그 정보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단히 중요한 조항을 위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개인관련 데이터 접근의 경우 소비자의 정보이익보다 그 데이터의 보호이익이 더 큰 경우(제2호 a)
- 지적재산권의 보호 특히 저작권의 보호가 정보청구에 의하여 위협받는 경우(제2호 b)
- 요구된 정보를 통해 업무상 비밀 혹은 사업상 비밀, 특히 경쟁에 중요한 비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c)

## VI. 결론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위의 소비자정보법에 해당하는 사항과 환경정보법에 해당하는 사항을 단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소개를 통해서 한국정보공개법의 미진한 사항이나 공개대상정보, 공개대상의 예외규정 등의 개정에 있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하여 좀 더 폭 넓은 정보의 공개가 보장되고 환경이나 소비자보호 분야에 있어서 시민에 의한 사전감시와 사후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홍 강 훈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